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26
----------	------

2020년 2월 2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2월 24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 가. 제안이유
 - 월경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에 대한 도시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 보전을 위한 주변국 도시간의 국제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상설 국제기구를 구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과 지속성을 위해 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 규정 신설.
-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구축(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안 제24조의2제2항제2호)
- 대기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안 제24조의2제2항제3호)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지원
(안 제2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4조의2제3항)
- 대기질 개선 활동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 유치 및 지원
(안 제24조의2제2항제5호)
-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지원
(안 제24조의2제2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10.31.~11.20.) 결과: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East Asia Clean Air Cities Network, 이하 협의회)’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의 약 50%는 국외에서 배출되어 유입된 것이고 고농도 시에는 최대 80%까지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¹⁾. 이 결과는 서울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내외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국제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간 추진해 온 국제협력 사업은 정보 교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협력 당사국 또는 도시들 간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의 실행까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특별시, 2016), 고농도 초미세먼지 국내외 기여율 분석 결과(국립환경과학원, 2018)

- 서울시는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또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일례로 서울시에서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클레이³⁾ 동아시아본부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호를 근거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이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협의체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국제기구로, 설립주체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당해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당해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5. 기타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 설립 주체가 서울시인 국제기구로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GSEF) 및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별도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4조의2제2항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관련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제1호에 협의체 구축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협의체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는 등 협의체 구축과 협의체의 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등 조문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안 제24조의2에서 협의체 구축과 협의체 업무에 관한 사항이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등 조문 체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26
----------	------------

제안년월일 : 2020년 2월 24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4조의2에서 협의체 구축과 협의체 업무에 관한 사항이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등 조문 체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안2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를 조문 체계에 맞게 수정함.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2.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3.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4.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회 회의 개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2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대기 오염 등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이하 "협약체"라 한다)의 구축 2.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3.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4. 협약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과 지원 5.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p>제2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이하 "협약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2.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3.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4.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약체 회의 개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6.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체 회의 개최·지원

7. 그 밖에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2. 도시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 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3.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4.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회 회의 개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